

기업 재난관리 표준의 법적성격 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 and System Improvement Methods of Enterprises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이 상 수* · 정 종 수**

Rhee, Sang-Soo · Cheung, Chong-Soo

요 약

재난은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생되어왔다. 최근 21세기 들어 발생하는 재난은 그 현상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 태풍, 집중호우, 강풍, 폭설, 지진, 황사 등의 자연재난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화재, 건축물의 붕괴, 지하철사고, 테러 및 감염병 등의 사회 재난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및 대형 테러 등 전 세계적 차원의 사회 재난의 발생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개인이나 국가의 정책만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리질리언스(Resilience)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7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 이라함.)이 공포된 지 약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이는 법 제도화를 통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 후 현재 까지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지만 경과 년 수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후 그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 검토 및 유지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기업재난관리표준을 2010년 4월 2일 제정하였고 이후 재해경감활동 수립계획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제정된 이후 2013년 12월 9일 전면 개정작업을 통해 경영관리 프로세스 모델(Plan-Do-Check-Act)이 적용된 관리체계를 접목시키고 용어정의를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기업재해경감활동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주무부처가 바뀌고 조직이 변화되어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07.26.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과 연관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법적성격 과 지위를 규명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관련분야 적용 시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 재해경감활동, 연속성, Resilience,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업재난관리표준, 기업재해경감활동 수립기준, ISO 22301, P-D-C-A모델

1. 서 론

* 정희원, 숭실대학교 기업재난관리학과 박사과정 rhhrss55@naver.com

** 정희원,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 isobcm@gmail.com

현대에 발생하는 재난에 있어서 개인이나 기업의 역량으로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난을 예방하고 사후 복구에 있어서 까지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가 강력하게 요구 되어져 왔다. 이는 국가의 본연의 기능로서 방재책무로 표현될 수 있다.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방재책무는 법령의 제정과 방재행정의 집행을 통하여 달성된다. 이에 따라서 헌법에 근거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풍수해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지진화산 대책법, 재해구호법, 민방위기본법, 수난구조법, 소방기본법 등 재난 및 안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을 집행하는 행정 작용이 방재행정이다. 이하에서는 방재행정의 일부인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 및 개정 되어 시행되고 있는 기업재난관리표준에 관한 타 법령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법적성격 및 지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 2-1. 재난관리에 관한 법령의 체계
- 2-2.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법적성격 및 지위
- 2-3 ISO 22301의 규정
- 2-4 기업재난관리표준 과 ISO 22301의 관계
- 2-5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

3. 결론

1)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법적성격 및 지위는 기업 재해경감법에 근거한 행정규칙으로 파악 되었으며, 국제표준협회서 제정한 ISO 22301은 민간조직에서 채용한 규정으로 적용여부는 임의적이다. 따라서, 기업 재해경감법상의 우수기업의 인증을 위한 대행자 컨설팅 및 인증에 있어서 기업재난관리표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재난관리사 시험(실무, 대행 및 인증분야)에 있어서도 기업재난관리표준이 ISO 22301보다 상위의 법적지위를 가진다 할 수 있다..

2)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은 국제표준(ISO 22301,22313)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상위수준구조(HLS)의 체계 정비 및 용어의 정의, 모호한 표현의 수정, 점진적인 계획수립의 의무화규정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행정안전부의 기업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기업 재난관리 표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07.26.일)
2. 기업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기준(2014.11.17.)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4호, 2013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7.01.08.)
5. ISO 22301:2012, Societal Security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s-Requirements
6. ISO 22313:2013, Societal Security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s-Guidance
7. ISO 9001:2015, Quality Management Systems-Requirements
8. ISO 14001:2015,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Requirements
9. NFPA 1600:2010 Standard on Disaster/ Emergency Management and Business Continuity Programs